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7. 16 선고 2020가단277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---

## 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7. 16.

## 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. 4. 25. 접수 제218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형철

별지